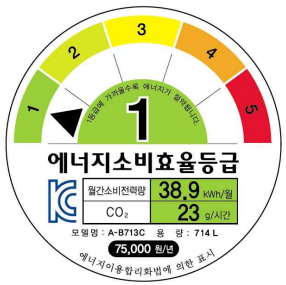
경제혁신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보 도 자 료
희망의 대한민국
http://www.motie.go.kr
2015년 9월 1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8.31일(월) 오전 11시 이후 보도가능)
문의 : 에너지수요관리과 양원창 과장(044-203-5380), 윤상재 사무관(044-203-5382)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소비자 중심으로 디자인 바꿔

- 에너지비용 표기 확대, 산출근거 명시 등 디자인 개선 -

□ 소비자가 에너지소비효율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현행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이하 **라벨**)**의 디자인이 변경·개선**한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에너지소비효율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라벨 크기를 대폭 확대**하고 **에너지비용 산출근거를 명시**하는 등 **효율**등급라벨을 개선하는 내용의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을 개정고시('15.9.1)하고, 2016년 7월부터 출시되는 제품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현 행	개 선
	
형태 : 7㎝×7㎝ 원형	형태 : 7㎝×9.5㎝ 반원&직사각형

□ 이번 개선은 현행 등급라벨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 **라벨 디자인에 대한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에너지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소비자가 관심 있는 에너지정보를 부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특히,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에너지비용**에 대한 표기는 연령층에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크기를 대폭 확대**하고,

○ 주요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에너지비용에 관한 구체적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소비자들이 제품 사용시간 등을 조절하여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에너지비용 산출근거 명시 내역>

- 냉장고: 표준시험환경에서 일24시간 가동 기준
- 에어컨: 표준시험환경에서 일7.8시간 가동 기준
- 세탁기: 표준시험환경에서 월17.5회 가동 기준
- 텔레비전(TV): 표준시험환경에서 일6시간 가동 기준
- 전기밥솥: 표준시험환경에서 월36.5회 가동 기준

○ 또한, 전기냉방기, 전기난로(stove), 전기온풍기 등에 적용되고 있는 **월간 에너지비용 대상품목에 제습기를 추가**하고, 현재 등급판정 적용기준 시행일시에 대한 정보가 없어 **소비자가 겪는 혼란**(동일 제품이면서 등급이 상이)**을 해결하고자 적용된 기준의 시행일시를 명시**하는 등 소비자 중심의 에너지효율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아울러 **에너지효율라벨의 크기를 대폭 확대**(7㎝×7㎝ → 7㎝×9.5㎝)하고, 형태를 '원형'에서 '반원+직사각형태'로 변경하여 **에너지효율라벨과 에너지정보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도록 디자인을 개선하였다.

□ 최근 다양해져 가는 제품디자인으로 인해 등급라벨의 제품 부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부착위치, 부착방법 등을 유연하게 개선,** 제조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였다.

○ 우선, 라벨의 크기가 대폭 확대되는 만큼, 소형 가전제품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라벨표시 축소비율을 60%로 완**화(현행 75%)하였으며,

○ 텔레비전(TV),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등 **제품의 디자인이 빠르게 변하거나 소형화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에너지정보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부착위치를 확대**하였다.

<등급라벨 부착위치, 부착방법 등 개선사항>

- 텔레비전(TV) (외형테두리 축소) : 전면 → 전면 또는 후면
- 전기밥솥(구(球)형 제품) : 전면/윗면 → 전면/윗면/측면
- 공기청정기(공기흡입구가 전면에 위치) : 전면 → 전면/측면
- 전기진공청소기(소형·구(球)형 제품) : 75% 축소 → 자율축소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개선으로 인해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제품 보급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새롭고 다양한 제품 디자인 개발 등 관련 산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첨 부 1.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 개요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과 윤상재 사무관(☎ 044-203-53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표시제도 개요

1) 개요

○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고 에너지 소비가 많은 기자재를 대상으로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효율등급을 1~5등급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일정수준 이하의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해서는 **생산·판매를 금지하는 제도**

○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손쉽게 판단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에 따라 효율등급 라벨(1~5등급, 에너지비용 등) 부착하고,

- 또한, 제조업체에게는 생산단계에서부터 에너지 절약형 제품을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유도

 * 최저소비효율기준(MEPS :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 : 일정한 에너지 효율에 미달되는 저효율제품의 생산·판매를 금지

- 대상제품 제조·수입업체의 의무적(Mandatory) 신고 제도

2) 도입 및 법적근거

○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는 '92년도 전기냉장고, 형광램프 등을 시작으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보급률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도입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및 제16조 등

3) 대상품목 : 26개 품목

전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세탁기, 전기냉온수기, 전기밥솥, 전기진공청소기, 선풍기, 공기청정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형광램프용안정기, 안정기내장형램프, 삼상유도전동기, 가정용가스보일러, 어댑터·충전기, 전기냉난방기, 상업용전기냉장고, 가스온수기, 변압기, 창세트, 텔레비전수상기, 전기 온풍기, 전기스토브,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제습기, 자동차, 타이어

* 별도 고시로 운영되는 자동차, 타이어 포함시 28개 품목, 셋톱박스 및 전기레인지(15.10 예정)